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안 제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노력(안 제4조)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제15조)
-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안 제16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는 전체사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이 99.9%로 전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근로자의 93.2%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의 경우 전체의 77.1%에 불과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19년 기준)
-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경제력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키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규모의 영세함과 우수인재의 부족,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제품구매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를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21년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의무구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기관 구분	기관명	2021년 구매계획			2021년 구매실적			구매 목표 달성 여부
		총구매 합계(A)	중소기업 구매 합계(B)	비중	총구매 합계(A)	중소기업 구매 합계(B)	비중	
광역 지자체	충청북도청	395,865	336,288	85%	300,451	241,892	80.5%	미달성
지방 공기업	충북 개발공사	148,570	126,286	85%	116,061	99,909	86.1%	초과
지방 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7,832	8,928	50%	9,012	1,789	19.9%	미달성
지방 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5,416	12,696	50%	11,291	9,323	82.6%	초과

※ 출처: 공공구매 종합정보시스템(2021년 기준)

-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함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라고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은 없으나,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부 산 광 역 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21.03
대 전 광 역 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17.02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
광 주 광 역 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20.09
울 산 광 역 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
경 기 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2.03
강 원 도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1994.01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17.05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19.05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사항으로,
 - 중소기업의 수주(受注) 기회 확대 및 구매 목표 비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여 안정성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영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 안 제5조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는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단순히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영역에서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판로 등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추진계획 수립하고 공공영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짐